Purchase Order (발주서)

| 발주(PO)번호 | | 150199 | 2309 | 발주(PO)일자 | 2024-05-21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공급자 | 스테리비 | ├이오E | 크주식회사 | 발주자 | 한미약품(주) 한미 본사 | | |
| 주 소 | | | : 30 (송도BRC스마트 H)비동901-1호 | 주 소 |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| | |
| 담당자 | | | | 담당자 | 박상용 | | |
| TEL | 031-385-6660 | FAX | | TEL | 02-410-9158 | FAX | 02-410-9259 |
| 납품장소 |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| 추팔산단 | ·로 114 한미 바이오플랜트 | Total | VAT 별도 5,740,000 | | |
| 요청자 | 이혜림 | TEL | | Amount | | | |
| 지급조건 | 신한구매키 | ·드 발형 | y 60일 후 만기 | (합계금액) | | | |

| No | Mat.No (자재) | Desc (자재내역) / 제조원 / MPN (제조자부품) | 수량 | 단가 | 금액 | 납기일 |
|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10 | 146006815 | 설비_1공장_GCSF K-Prime(ACS904) / 3way valve / / | 2EA | 1,990,000 | 3,980,000 | 2024-06-11 |
| 20 | 146006817 | UV filters / / | 1EA | 1,760,000 | 1,760,000 | 2024-06-11 |

1. 계약일반사항

- 1) 본 발주서에 의거하여 주문하는 제품(이하 "제품")의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납기일, 대금지급조건 및 지급통화(USD, EUR, JPY, CHF, GBP, 원화) 등 세부사항은 본 발주서 기재에 따른다. 단, 대금지급기일은 제4조에 따른 검사 후 납품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다.
- 2) 발주자는 본 발주서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, 공급자가 본 발주서를 수령한 후 작업을 개시하거나, 5일이내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본 발주서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3) 계약기간은 본 발주서의 승낙일로부터 제품의 검사완료 후 대금지급 완료시까지로 한다.
- 4) 본 발주서에 의거한 주문에 대하여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본 발주서에 우선한다.

2. 납품이행 등

- 1) 공급자는 본 발주서 기재에 따라 발주자가 정한 납기일과 수량, 요구사양에 맞춰 정확한 납품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
- 2) 공급자는 납기일 내에 제품의 납품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고 납기일 연장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- 3) 공급자가 제2항의 납품 지연에 관하여 사전 통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일까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4)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, 발주자는 전 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별개로 공급자에 대하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3. 반품 등

제품이 본 발주조건 또는 견본품(QC보관, 검수)과 상이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수하지 않고 반품할 수 있으며, 공급자는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 반품 및 교환을 위해 발생하는 운송료 등 일체의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.

4. 검사

발주자는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.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
5. 대금조정

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에 한하여,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라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가격 변동에 대한 공문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, 발주자는 자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.

6. 해제·해지와 손해배상

- 1)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이행최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,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2)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수표의 부도,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(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), 파산신청,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,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3)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(직인생략)